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원회의 재개 등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42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법률의 제명 변경 및 희생자·유족의 범위 확대 등	5
2. 위원회의 사업 범위 재조정 및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규정 삭제	19
3. 미수금 지원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	26
4. 위원회의 재개	29
5.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 마련	35
6. 피해진상 재조사 근거 마련	38
7.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 변경	41
8.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 신청 소멸시효 연장	43
9. 벌금 상향	4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40인
2. 제 안 일 : 2024. 10. 10.
3. 회 부 일 : 2024. 10.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섯 차례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활동한 끝에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음. 또한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피해 지원이 이루어져 국내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1945년 8월 22일 강제동원 한국인을 태우고 부산으로 귀국 중이던 우키시마호가 침몰하면서 수천명의 한국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승선자 명부가 일본측으로부터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피해조사 및 지원을 하지 못하였다가 지난 9월 한국인 승선자 명단 일부를 확보함에 따라 이들 뿐 아니라 추후 확보되는 승선자 명부 등을 통한 우키시마호 침몰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할 필요가 상당함.

한편, 2016년 일본이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며 2024년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향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함.

또한 희생자 유해에 대한 신원 판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보완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징용 소송 제3

자 변제를 시행하는 등 설립 취지에 반하는 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재단의 사업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나.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미수금 지급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라. 이 법에 따라 구성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 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위원회 존속기한이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진상조사 기간을 삭제

하고, 존속기한에 맞추어 위로금등의 신청 기한을 규정하며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함(안 제19조제2항 삭제,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

바.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봉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사.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각하 및 기각 등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재단의 사업을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37조).

자. 벌칙의 벌금 액수를 징역형과 균형을 이루도록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2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법률의 제명 변경 및 희생자·유족의 범위 확대 등(안 제1조 등)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명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내용(왜곡대응, 국내강제동원)을 각 조문에 반영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u>나아가</u>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u>국외강제동원</u>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1조(목적) ----- ----- -----<u>그 왜곡행위에 대응하며 나아가</u>----- ----- -----<u>강제동원</u>----- ----- -----. 제2조(정의) ----- -----.

1. · 2. (생략)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1. · 2. (현행과 같음)

3. 강제동원 희생자-----

-----.

가. -----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의 경우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의 기간을 포함한다) 중에

-----강제동원-----

나. -----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의 경우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의 기간을 포함한다) 중에--

다. (생략)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 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

다. (현행과 같음)

4. 강제동원 생환자-----

사람 또는 국내로 강제동원되었던 사람 중 강제동원 희생자-----
-----강제동원 생환자로-----
-----.

5. -----

-----강제동원되어-----

-----.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
-----강제동원-----

-----제8조제3호·제6호 및 제7

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 4. (생략)

② · ③ (생략)

④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친족 중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근친 또는 연고자의 순으로 정한다.

제4조(위로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 왜곡대응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

제4조(위로금) ① -----강제동원-----

-----.

1. 강제동원되어-----강제동원-----

2. 강제동원되어-----
-----강제동원-

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
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제6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 (생략)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2. ~ 4. (생략)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

② 국가는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료지원금) ① -----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

1. 강제동원-----강제동원-----

2. ~ 4. (현행과 같음)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가 아닌 자는 <u>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 원위원회</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u>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 자등지원위원회</u> ----- -----.
---	---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 등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피해 지원이 이루어져 국내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상을 당하지 않은 생환자(국외 및 국내강제동원 포함)는 19만명, 국내 강제동원희생자는 655만명으로 추정되고, 이들은 현행법에 따라 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명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내용(왜곡대응, 국내강제동원)을 각 조문에 반영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제동원 왜곡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강제동원희생자, 부상을 당하지 않은 생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희생자, 유족 등>

구 분	현행법	개정안
희생자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u>희생자</u> -미수금피해자	-현행법 대상자 -국외강제동원 <u>생환자</u> -국내강제동원 <u>희생자 및 생환자</u>
유족	희생자의 ① 배우자 및 자녀, ② 부모, ③ 손자녀, ④ 형제자매	좌동
위로금 등	국외강제동원	국외+국내강제동원
	1. <u>사망, 행불</u> 시 2천만원 2. <u>강제동원으로 장애</u> 를 입은 경우 : 2천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1. <u>사망, 행불</u> 시 2천만원 2. <u>강제동원으로 장애</u> 를 입은 경우 : 2천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3. <u>강제동원생환자</u>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치료나 보조장구 사용 필요 시 의료지원금 지급	

다만,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대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의 목적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한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외강제동원희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개정안이 입법화할 경우 당시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내강제동원희생자 및 부상을 당하지 않은 생환자까지 위로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당한 재정부담이 요구되므로, 개정안의 입법화는 현행법의 입법취지, 국가 재정부담 정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지급하였을 때, 265억 3,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¹⁾

1)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는 안 제4조(위로금) 제1항에 따른 국내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합계
사망· 행방불명자	대상자(A, 명)	408	408	408	1,224
	지급단가(B, 백만원)	20	20	20	-
	소계 (C=A×B, 백만원)	8,160	8,160	8,160	24,480
부상자	대상자(D, 명)	94	94	93	281
	지급단가 (E, 백만원)	7.3	7.3	7.3	-
	소계 (F=D×E, 백만원)	686	686	686	2,058
추가재정소요 (G=C+F, 백만원)		8,846	8,846	8,846	26,538

주. 대상자 및 지급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기간(2010.3.~2015.12.) 중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가 완료되고,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건은 1,505건임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현황>

(단위: 명)

사망	행방불명	후유장해
1,059	165	281

주. 2024년 9월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게 지급할 위로금 중 부상자의 지급단가는 2천만원의 범위에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장애의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부상자의 위로금 지급 평균 단가인 730만원을 준용함
- 안 제33조에 따르면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위로

금만을 추계한 것이며, 생환자에 대한 위로금, 미수금지원금, 의료지원금은 추계가 곤란하여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금 지급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행방불명자 1,224명은 3년간 연간 408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중 부상자(후유장애) 281명은 2026년 94명, 2027년 94명, 2028년 93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동안 위로금 지급단가인 사망·행방불명자 2천만원, 부상자 730만원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러나, 이는 국내강제동원 피해자 중 사망, 행방불명, 후유장애인 사람(1,505명)에 대해서만 추계되어 재정소요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위원회 피해조사 건수 및 피해인정 건수>

구 분		계		군인	군무원	노무자①	위안부②	기타③
조사건수 *		225,812		33,220	36,734	155,176	338	344
피해인정		217,296		32,647	36,356	148,174	23	96
국내	국외	23,424	193,872					
사망	18,945		3,204	8,491	7,234	-	16	
	1,059	17,886						
행방불명	6,584		1,052	975	4,545	-	12	
	165	6,419						
후유장해	3,394		417	575	2,399	1	2	
	281	3,113						
귀환 후 사망	145,056		16,474	19,578	108,942	7	55	
	12,459	132,597						
귀환 후 생존	43,317		11,500	6,737	25,054	15	11	
	9,460	33,857						

※ 피해가 인정된 217,296명에는 위안부 및 기타 119명 포함

※ 자료: 행정안전부

반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217,177명(위안부 및 기타 119명 제외)에 대해 위로금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기존에 위로금 지급 결정액(4,622억 5,800만원)을 제외하면 약 4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추가 재정 소요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

<위로금 등 지급대상 및 지급액 비교>

구 분		현행법	개정안
위로금 (제4조)	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또는 그 유족)	• 국내·외강제동원 희생자(또는 그 유족) • 국내·외강제동원 생환자(또는 그 유족)
	대상자 수	31,873명	217,177명 (위원회 피해조사 기준)
	지급액	4,622억 5,800만원	4조 3,435억 4,000만원 ※1인 2,000만원으로 일괄 추계
미수금 지원금 (제5조)	대상	• 국외강제동원 미수금피해자(또는 그 유족)	• 국내·외 미수금피해자(또는 그 유족)
	대상자 수	16,228명	추계 곤란 ※현재 국내 미수금피해자 파악 불가
	지급액	521억 8,200만원	추계 곤란
의료 지원금 (제6조)	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 국내·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 국내·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대상자 수	24,541명 ※생존자 904명('24.1.기준)	추계 곤란 ※현재 국내 생존자 파악 불가
	지급액	1,308억 1,600만원	추계 곤란

※ 자료: 행정안전부

2) 행정안전부는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추계하고 있으나, 사망자등은 2,000만원, 부상자·생환자는 2,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므로 과다추계된 것으로 보임.

< 위원회 조사결과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명)

구 분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기타	합 계
합 계	32,647	36,356	148,174	23	96	217,296
사 망	3,204	8,491	7,234	-	16	18,945
행방불명	1,052	975	4,545	-	12	6,584
후유장애	417	575	2,399	1	2	3,394
귀환 후 사망	16,474	19,578	108,942	7	55	145,056
귀환 후 생존	11,500	6,737	25,054	15	11	43,317

※ 자료: 행정안전부

둘째, 추가된 왜곡대응이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개정안은 위원회를 재개하면서 그 기능에 왜곡대응을 추가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바,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에 의할 때 왜곡대응은 과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거짓으로 지어쓰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보임.

따라서, 대다수의 과거사 및 민주화 개별 법률은 피해 진상규명, 희생자 및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본정부 등의 왜곡에 대한 대응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의 제명 및 목적에 왜곡대응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의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 확대와 그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외 강제동원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채우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2009헌마94)한 바 있으며,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 확대는 대규모 국가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재정부담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의 법률제명 및 목적에 왜곡 대응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왜곡 대응은 과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거짓으로 지어쓰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당초 입법취지와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거짓으로 지어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판단 의무가 부여될 우려가 있고, 현재 강제동원 관련 새로운 자료의 확보 및 분석 과정에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위원회의 사업 범위 재조정 및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규정 삭제(안 제8조 등)

개정안은 제명 변경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명칭 및 심의·결정 사항을 재조정하고,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u>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u>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u> 의 설치 및 업무) ----- ----- ----- <u>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2의2. <u>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왜곡(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것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거짓으로 지어 쓰는 것을 말한다) 대응에 관한 사항</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u>	<u><삭제></u>

5. (생 략)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
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
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
항

7. 국외강제동원 생존자에 해당되
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
로 인한 장애의 판정에 관한 사
항

9. · 10. (생 략)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
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
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
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
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 · 추도탑 · 추
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

5. (현행과 같음)

6. 강제동원-----

-

7. 강제동원 생존자 및 그 유족---

8. 강제동원-----

-

9. · 10. (현행과 같음)

11. 추도공간(추도묘역 · 추도탑 · 추
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1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 · 학술 사업 및 조사 · 연구
사업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 제>

<u>관 및 박물관의 건립</u> <u>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u> <u>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u> <u>업</u> <u>4. 그 밖의 관련 사업</u>	
---	--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은 위원회의 명칭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³⁾로 변경하고, 피해

자 관련 재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위원회가 피해자 관련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등의 심의·결정 사항>

	현행	개정안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작동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작동
2의2	-	<u>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왜곡대응에 관한 사항</u>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작동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삭제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작동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에 관한 사항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작동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작동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u>
12	-	<u>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u>
1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현행과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위원회는 본질상 같은 위원회임을 감안하여 모두 위원회로 축약하여 표기함

이와 관련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추념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과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으로 국민통합과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도순례 등 위령사업, 해외 추도공간 조성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 학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개요>

☐ 연 혁

- ('12.3.9.) 재단 설립준비위원회 발족(총 8명)
- ('14. 4. 16.) 행정안전부에 재단 설립허가 신청
- ('14. 6. 2. / 3.) 재단 설립허가/등기
- ('15. 1. 29.) 기타공공기관 지정/ ('16. 3 .7.) 법정 기부금단체 지정(기재부)
- ('16.3.30./'20.1.1./'23.1.1./'24.1.1.)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탁관리 운영
 -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설립허가) 등
 - 지원근거 : 「대일항쟁기법」 제37조(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출연)

☐ 조직구성

- (조 직) 1사무처 2국(피해지원국, 경영지원국) 1관(역사관)
- (정·현원) 53명/현재 41명(비상임 이사장 포함) * '24. 12. 31. 기준

☐ 주요 업무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도순례 등 위령사업
- 해외 추도공간 조성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 학술사업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복지지원, 역사관 운영·관리 등

☐ 2025년도 예산 : 6,916백만원(민간경상보조, 위탁사업, 자체사업)

- 민간경상보조 3,827백, 위탁사업(역사관) 2,885백, 자체사업 204백

※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업의 주체가 위원회로 단일화됨으로써 보다 책임감있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13년의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조직인 바, 위원회의 활동기간 이후에는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의 시행 주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위원회 및 재단의 이원적 구조는 다른 과거사 법률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⁴⁾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행정위원회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①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운영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행기능 성격의 관련 사업을 어느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경우, 현재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지원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위령사업, 학술·문화, 조사·연구 사업 등의 업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활동기간이 정해진 위원회보다 재단 등이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타 과거사 사건들도 관련 학술·문화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재단에서 수행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미수금 지원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 (안 제5조제3항)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지원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인정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미수금 지원금) ① · ② (생략) <u><신설></u>	제5조(미수금 지원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지원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u>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지원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인정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의 산정방식은 경제성장이 고려되지 않았고, 실제 미수금 지원금의 규모가 적게 산정되어 현재 시점에서 유의미한 금액이 아니어서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의 입법 취지가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아닌 국가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⁵⁾

개정안의 입법화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 현행법의 입법 취지, 국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 구제조치는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상이 아니고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산법은 그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위 미수금 지원금의 산정방식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9헌바317)한 바 있고, 지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를 고려해 해외사례 및 물가상승률보다 그

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금액으로 상향(1엔당 2,000원) 지급한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위원회의 재개(안 제19조)

개정안은 새로운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①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②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3년-----.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기간 내 완료를 위한 계획 또는 대책을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	③ -----제1항에 따른 기한-----.
	④ -----존속기

<u>간</u>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제35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u>한</u>이----- ----- -----. 제35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되,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0년 4월 20일에 활동을 시작하여 희생자 결정을 완료하고 2015년 12월 31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

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음.

<위원회 개요>

- (설립목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지급 등
 - ※ 피해진상규명 대상: 국내외 강제동원 / 위로금 지급대상: 국외강제동원
- (주요업무) 피해진상조사, 위로금 등 지급, 피해관련 자료분석, 유해봉환 및 추도사업 등
- (위원구성) 총 11명(위원장 1, 정부위원 3, 민간위원 7)
- (인력/예산) 78명(공무원 35, 자체 채용 43), 310억원('15년 예산)
 - ※ 존속기간(약 6년) 동안 총 7,273억원(운영예산 1,155, 위로금등 6,118) 소요
- (존속기간) 2010.4.20. ~ 2015.12.31.

※ 자료: 행정안전부

<위로금 등 지급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위로금		지원금	
			사망·행불	부상	미수금지원금	의료지원금
접수·처리건수		112,671	20,682	33,278	33,329	25,382
지급결정	건수	72,642	17,880	13,993	16,228	24,541
	금액	645,256	360,073	102,185	52,182	130,816
실지급액	금액	639,690	355,785	101,442	51,647	130,816

※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이후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어 신청 등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위

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재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⁶⁾

특히, 일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24일 귀국하려던 조선인 노동자를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이 승선자 명부를 제공함에 따라 우키시마호 침몰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 및 136명의 조선인 강제징용노동자가 수몰되어 희생된 조세이탄광 발굴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를 재개하여 새로운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제동원피해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13년으로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위원회 재개에 따른 접수건수, 처리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존속기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

6)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후 모든 업무가 종료되어 강제동원 피해자 신규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함.

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024. 9. 23., 의안번호 제4199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은 조사를 어떻게 수행할지 수행방식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⁷⁾

처리속도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는 반면,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수용성 측면에서는 위원회를 재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추가 구제를 위해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를 설치 및 활동 재개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대일항쟁기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조사는 11년('05.~'15.), 위로금 등 지급 업무는 7년('08.~'15.)동안 실시하였고,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는 주로 외교적 협상 등을 통한 자료 확보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피해조사와 위로금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재개의 수요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 재개는 별도 조직·예산 등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사회적 합의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임.

7)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면서 위원회를 재개하고 국내강제동원희생자 및 생환자에게도 최대 위로금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제6114호, 2024. 12. 2.)이 회부되어 있어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강제동원 피해조사는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이미 11여년('04.~'15.)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으며, 통상 3~4년간 존속하도록 규정한 타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대 13년의 존속기한의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개정안은 피해자 또는 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2(유전자검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봉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과 공신력을 구비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서 제출 절차, 자료의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8조제2호는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경우 유전자정보를 통한 피해자의 신원 판별 등이 필수적인데, 피해자의 유해를 판별할 유전자 정보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자 정보의 취득·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사망한 사람 유해의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⁸⁾등의 입법례와 같이 유해와 유족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8)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유전자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수습·봉환은 국가의 책무로서, 관련 업무 추가 및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원회 재개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검사 주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피해진상 재조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개정안은 각하·기각·피해판정 불능 결정 건에 대하여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u><신설></u>	제25조(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25조의2(피해진상 재조사)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제25조에 따른 피해판정 불능결정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불능이나 피해판정 불능 결정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

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 할 수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이후 국외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어 신청 등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재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최근 일본이 우키시마호 희생자 관련 승선자 명부를 공개하고 조세이탄광 발굴작업이 추진되는 등 피해진상 재조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각하결정, 기각결정,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이후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신청인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남은 조사를 어떻게 수행할지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2016년 일본이 「전몰자의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 발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세이탄광 등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재개와 행정안전부의 조사 수행 중 어느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재개는 그 수요 예측의 어려움과 행정비용의 소요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여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자료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7.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 변경(안 제27조제2항)

개정안은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생략)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u>2014년 6월 30일 이내에</u>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 <u>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u>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현행 “2014년 6월 30일 이내”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화에 따라 위원회가 재개될 경우 위원회 재개에 따른 신청건수, 처리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신청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보호·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를 말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재개는 그 수요 예측의 어려움과 행정비용의 소요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위원회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3년간 상시적인 신청 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재정 여건,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 신청 소멸시효 연장(안 제33조제1항)

개정안은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소멸시효 등) 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u>1년간</u>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33조(소멸시효 등) ① ----- ----- ----- ----- <u>3년간</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개정안은 신청인의 권리 행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신청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의 입법화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 개별 과거사 및 민주화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대부분의 과거사 법률은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재개는 그 수요 예측의 어려움과 행정비용의 소요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위원회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민주화보상법」, 「5·18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 등 대부분의 과거사 관련법에서 소멸시효를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9. 벌금 상향(안 제42조제1항)

개정안은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2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① ----- ----- ----- ----- ----- ----- ----- <u>5천만원</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2022. 1. 20., 지침 제390호)은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징역 1년당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범죄의 종료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징역	벌금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u>5년 이하</u>	<u>5천만원 이하</u>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간 균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액을 정비하는 것은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